

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도민에게 불편 부담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삭제·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객관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12조(위탁의 취소) 4호, 5호 삭제
 - 4.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
 - 5.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객관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